

특약 개정 대비표

- 약관명: 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특약
- 변경 시행일: 2026년 06월 22일 (월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- 주요 변경 내용: 특별 중도해지 대상 추가 등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~ 제6조 <생략></p> <p>제7조 우대금리 <u>1. <생략></u> <u>2. <신설></u></p> <p><u>3.<신설></u></p> <p><생략></p> <p>제8조 <생략></p> <p>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 <생략> ①~② <생략> <u>③ <신설></u></p> <p>2. <u><신설></u>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.~3. <생략> 4.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 ~ 제6조 <좌동></p> <p>제7조 우대금리 1. <좌동> <u>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9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가입유지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</u> <u>3. 본조 제2항에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이 가입시 충족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 가입 시 달성여부 기준을 적용하며, 그 외 우대조건인 경우 특별중도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 동안 우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합니다. 단, 가입일부터 특별중도해지일까지 우대조건 달성실적이 없는 우대조건의 우대금리는 제외합니다.</u></p> <p><좌동></p> <p>제8조 <좌동></p> <p>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 <좌동> ①~② <좌동> <u>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(이하 “청년미래적금”이라 합니다)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요건을 갖추어 특정기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</u> 2. <u>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.~3. <좌동> 4.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며, <u>정부기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</u> <u>5. 정부기여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 부터 만기일(특별중도해지 및 3년 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)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.</u> <u>6.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정부기여금에 제6조 제4항에 따른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</u></p>	<p>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</p> <p>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</p> <p>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</p>

<p>5. <생략> 6. <생략></p> <p>제11조~제 14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<u>본조 제5항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</u></p> <p>7. <좌동> 8. <좌동></p> <p>제11조~제 14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 1>~<부칙 8>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부칙 9></u></p> <p><u>이 특약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 적용합니다.</u></p>	<p>5, 6항 내용신설 따른 번호 이기</p> <p>부칙 추가</p>
---	--	---